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 복지일자리(참여형) - 총 2명
 - *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약 5개월)
 -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주5일 이내)
 - * 근무지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 * 근무내용 : 사무보조, 프로그램 보조, 환경정리, 급식지원, 카페지원, 예술형일자리 등
 - * 보수 : 월 56시간 만근시 월 577,920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시간제일자리 - 총 2명
 - *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약 5개월)
 - * 근무시간 : 주5일(20시간) 1일 4시간
 - * 근무지 : 1명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기흥구 보정동 소재)
1명 : 스페로스페라 수지점(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 * 근무내용 : 사무보조, 프로그램 보조, 환경정리, 급식지원, 카페지원, 예술형일자리 등
 - * 보수 : 월 1,078,440원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전일제일자리 - 총 2명
 - *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약 5개월)
 - *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 * 근무지 : 1명 :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기흥구 보정동 소재)
1명 : 스페로스페라 수지점(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 * 근무내용 : 사무보조, 프로그램 보조, 환경정리, 급식지원, 카페지원, 예술형일자리 등
 - * 보수 : 월 2,156,880원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 모집인원 : 총 6명
- ☐ 공고기간 : 2026. 8. 19(수) ~ 모집완료시까지
- ☐ 접수기간 : 2026. 8. 19(수) ~ 모집완료시까지 수시 접수
- ☐ 면접일시 : 2026. 8. 25(화) 10:00~16:00 (면접일정 개별통보)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선정통보 : 미정
-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최고점자 성범죄경력조회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 결과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용인시 주민등록 거주 미취업 장애인(공고일 기준)
-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 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일자리 근로 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2년 이상 연속참여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 1급 ~ 3급)

· 참여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단, 만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3년~25년)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배점 총점의 5% 이상 감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제출서류

- ☐ 필수서류

- ① 참여 신청서 (희망직무 기재 필수)
 -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 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 추가서류

구분	증빙서류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급식지원 : 조리사 자격증 - 카페지원 : 바리스타 자격증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외 미인정														
여성가장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첨부서류</th></tr> </thead> <tbody> <tr> <td>공통사항</td><td>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td></tr> <tr> <td rowspan="9">선택사항</td><td>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td></tr> <tr> <td>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td></tr> <tr> <td>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td></tr> <tr> <td>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td></tr> <tr> <td>군복무 복무확인서</td></tr> <tr> <td>학교 재학 재학증명서</td></tr> <tr> <td>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td></tr> <tr> <td>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td></tr> <tr> <td>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td></tr> </tbody> </table>	구분	첨부서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구분	첨부서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첨 부 서 류	
	구 분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기타 참고사항

-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 관계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 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중사자) 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면접위원의 평정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031-895-32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장